

의안번호	2124113
의 퇴 인	강득구 의원
회 답 일	2023. 10. 27.
추 계 번 호	23F38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확대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4년 3,8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4, 취득세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중 다자녀 요건 확대(안 제22조의2)	-3,87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중 다자녀 요건 확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 확대 － 감면대상 확대: (현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개정안)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조세지출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3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4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4년만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향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 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
 - －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지방세법」 제20조)
- 향후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2자녀)로 인한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가정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건수 추정)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동 조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가구의 비중($7.12\% = \text{감면건수} / \text{가구수}$)이 2자녀 양육 가구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
 -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2022.10.)에 따른 2021년 기준 다자녀(3자녀) 양육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는 34,928건(293억원)
 - － 통계청, 「인구총조사」 상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수(2021년 기준)는 482.7만 가구이며, 2자녀 가구는 236.2만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49.0만가부로 집계
 - － 「2022 지방세통계연감」(2022.10)의 최근 자료(2021년 기준)와 맞추기 위해 인구총조사 자료는 2021년 기준을 적용
 - (향후 2자녀 자동차 취득건수 전망) 향후 2자녀 양육가구의 자동차 취득건수는 최근 5년(2017~2021년)간의 3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 감소율 5.7%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가정
 - (1건당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최근 5년(2017~2021년)간의 3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1건당 평균 감면액(158만원)이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
- 다자녀 연령기준 확대(18세 미만→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한 대상연령 확대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증가된다고 가정
 - 재정패널 자료¹⁾의 2자녀 및 3자녀 가구 가운데 18세 미만의 다자녀 가구 수 비중은 각각 12.7%·2.3%, 24세 이하 가구 수 비중은 19.7%·3.7%로 연령확대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14차년도(2021년 기준) 자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대체취득 등 포함²⁾)하는 경우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

-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① 이외의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②의 경우에는 140만원을 한도로 함

□ (감면 실적) 최근 5년간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연평균 5.7% 감소하고 있으며, 감면액은 연평균 646억원(1건당 158만원)의 감면을 받음

[표 2] 최근 5년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액 추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율/연평균액
건수(건)=A	44,159	45,937	39,811	39,333	34,928	-5.7%
취득세 감면액(억원)=B	668	758	576	630	597	646
1건당 감면액(만원)=B/A	151	165	145	160	171	158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방법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는 2024년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2자녀)의 효과를 추계한 후 자녀 연령기준 확대(18세 미만→24세 이하)에 따른 효과를 추계

2) 여기서 대체취득 등이라 함은 ①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와 ②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말함

(가) 다자녀 기준 변경(3자녀 → 2자녀)에 따른 세수효과

-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2자녀)에 대한 비용추계는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중 동 조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가구의 비중이 2자녀 양육 가구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 후 1가구당 감면액을 적용하여 추계
- (3자녀 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건수 비중) 현행 3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가운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가구의 비중은 7.12%(건수/가구수)
 - (다자녀 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건수)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2022.10)에 따른 2021년 기준 다자녀(3자녀) 양육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 건수는 34,928건(293억원)
 - (다자녀 양육 가구수) 통계청, 「인구총조사」 상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수(2021년 기준)³⁾는 482.7가구이며, 2자녀 이상 가구는 236.2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49.0가구로 집계

[표 3] 미성년자 양육 가구수 현황: 2021년

(단위: 만 가구)

	합 계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가구수(전국)	482.7	197.5	236.2	49.0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자녀 자동차 취득건수 추정) 2021년 기준 2자녀 가구 236.2만 가구에 3자녀 이상의 감면비율 7.12%⁴⁾을 적용하여 추정한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 건수는 168,174건

[표 4] 2자녀 기준 양육자가 자동차 취득 규모 추정 : 2021년

(단위: 만 가구, 건, %)

개정안 (2자녀)	가구수(D)	감면비율(C)	감면건수(E=D×C)
	236.2	7.12	168,174

3) 「2022 지방세통계연감」(2022.10)의 최근 자료(2021년 기준)와 맞추기 위해 인구총조사 자료는 2021년 기준을 적용

4) 3자녀 이상의 감면비율은 가구수 49.0만 가구에 지방세통계연보상의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건수 34,928건을 적용하여 산정

(단위: 만 가구, 건, %)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수(A)	감면건수(B)	감면비율(C=B/A×100)
	49.0	34,928	7.12

- 향후 2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함에 따라 2024년 2,229억원의 취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 3자녀 이상 경우의 취득세 감면건수 감소 추세(감소율 5.7%)와 건수당 감면액(15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5년(2017~2021년)의 연평균 1건 감면액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5]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세수 감소액: 2024년
(단위: 만 가구, 억원)

개정안 (2자녀)	가구수(A)	1건당 감면액(B)	감면액(C=A×B)
	141,051	158만원	2,229

(나) 다자녀 기준 변경(3자녀 → 2자녀)에 따른 세수효과

- 현행(3자녀) 감면액과 위 (가)에서 추정한 2024년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2자녀)에 따른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연령기준 확대(18세 미만→24세 이하)비율 만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6] 재정패널 기준 2자녀 및 3자녀 가구의 연령별 가구 수 비율: 18세 미만, 24세 이하
(단위: %)

구분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수 비중	24세 이하 다자녀 가구수 비중
2자녀 가구	12.7	19.7
3자녀 가구	2.3	3.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14차년도(2021년 기준) 자료

- 자녀 연령을 18세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는 2024년 1,62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현행 3자녀 가구의 자동차 감면액(연평균액 646억원)과 2024년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전망액(2,229억원)에 재정패널 자료에 기초한 연령확대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증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7] 자녀연령 확대에 따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액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기준 감면액 (A)	자녀연령 확대 감면액 (B=A×24세 이하 비중/18세 미만 비중)	취득세 감면 증가액 (=B-A)
2자녀 가구	2,229	3,457	1,228
3자녀 가구	646	1,039	393
세수 감면액			1,621

주: 1. 기준 감면액은 2자녀 가구의 경우 상기(가)의 2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망액, 3자녀 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현행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평균액
 2. 감면비율은 재정패널 전체 가구수 가운데 2자녀 가구 및 3자녀 가구 18세 미만 가구 비율 각각 12.7%·2.3%, 24세 이하 가구 비율 각각 19.7%·3.66%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상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확대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4년 3,8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액

(단위: 억원)

구분	2024
다자녀 자녀 수 확대(3자녀→2자녀)에 따른 감면액	2,250
자녀연령 확대(18세 미만→24세 이하)에 따른 감면액	1,621
합계	3,87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